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교육 국장을 보좌하는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5명, 6급 5명, 7급 3명)을 증원하며,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각각 국가인권교육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는 한편,

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고,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25. ~ 3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정책교육국, 침해조사국,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”을 “정책협력국, 침해조사국, 차별시정국,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정책교육국)”을 “(정책협력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정책교육국장”을 “정책협력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, 사회인권과, 국제인권과, 인권교육기획과, 인권교육운영과”를 “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, 사회인권과, 국제인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5항)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제6항제1호”를 각각 “제4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10항)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인권 관련 자료·정보의 조사·수집·정리·분석 및 보존
6. 도서관 자료의 열람·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
7.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·협력

8. 간행물의 관리

제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제3호”를 각각 “제1호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제2호 중 “아동·청소년”을 “아동·청소년·이주민”으로 한다.

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국가인권교육센터)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·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,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,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.

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·협력 및 시행
2. 인권교육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
3. 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·연구
4.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·협력
5.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
6.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·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
7. 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

8.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④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

2. 인권교육과정의 개발·관리

3. 인권교육과정의 운영

4.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·관리

5. 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 유지·관리

6.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

2.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급 및 관리

3.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

4.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

5.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

6.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을 통한 인권교육과정의 운영

7. 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2 중 총계 “206”을 “22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01”을 “21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94”를 “208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권교육콘텐츠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하부조직) 사무처에 운영지원과, 인권상담조정센터, <u>정책교육국</u> , <u>침해조사국</u> , <u>차별시정국</u> 및 <u>군인권보호국</u> 을 두고,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.	제6조(하부조직) ----- ----- <u>정책협력국</u> , <u>침해조사국</u> , <u>차별시정국</u> , <u>군인권보호국</u> 및 <u>국가인권교육센터</u> 를 ----- ---.
제8조(<u>정책교육국</u>) ① <u>정책교육국장</u>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	제8조(<u>정책협력국</u>) ① <u>정책협력국장</u> ----- -----.
② <u>정책교육국장</u> 밑에 <u>교육협력심의관</u> 을 두며, <u>교육협력심의관</u>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	<u><삭 제></u>
③ <u>교육협력심의관</u> 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	<u><삭 제></u>
④ <u>정책교육국</u> 에 <u>인권정책과</u> , <u>사회인권과</u> , <u>국제인권과</u> , <u>인권교육기획과</u> , <u>인권교육운영과</u> 및 <u>홍보협력과</u> 를 두되,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	② <u>정책협력국</u> 에 <u>인권정책과</u> , <u>사회인권과</u> , <u>국제인권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<u>인권정책과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인권(<u>제6항제1호</u> 에 따른 기	1. --- <u>제4항제1호</u> -----

본권·권리,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, 인권교육, 이주(移住)·아동·청소년·군 인권, 장애차별,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의 조사·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인권(<u>제6항제1호</u>에 따른 기본권·권리,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	2. ---<u>제4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(<u>제6항제1호</u>에 따른 기본권·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	3. ----- ----- -----<u>제4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
4. ~ 9. (생략) <u>⑥</u>·<u>⑦</u> (생략) <u>⑧</u> <u>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1호부터</u>	4. ~ 9. (현행과 같음) <u>④</u>·<u>⑤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
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
한 계획·협력 및 시행

2. 인권교육 관련 법령·제도·
정책·관행의 조사·연구 및
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
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

3.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
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
교류·협력

4.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
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

5.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
권고사항의 조사·분석과 그
이행에 관한 사항

6.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
등의 개발·보급 및 관리에
관한 사항

7.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
개발 및 관리

8. 인권 관련 자료·정보의 조
사·수집·정리·분석 및 보
존

9. 도서관 자료의 열람·대출
및 정보서비스의 제공

10.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

과의 교류·협력

11. 간행물의 관리

12.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

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교육에
관한 사항

⑨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
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
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
·평가

2.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
성과정의 운영·관리

3. 인권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

4.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
발·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

5.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
·관리

6.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
에 관한 사항

⑩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삭제>

⑥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인권 관련 자료·정보의 조
사·수집·정리·분석 및 보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(침해조사국) ① ~ ③ (생략)

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략)

2.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
· 제도의 개선

3.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
구제 조치의 권고, 법률구조의
요청,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
금 지급 및 진정한 · 증인의
보호

4.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
·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

⑤ ~ ⑧ (생략)

제9조의2(차별시정국) ① · ② (생략)

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략)

존

6. 도서관 자료의 열람 · 대출
및 정보서비스의 제공

7.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
과의 교류 · 협력

8. 간행물의 관리

제9조(침해조사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호-----

3. 제1호-----

--

4. 제1호-----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차별시정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차별행위(아동·청소년이 피해자인 차별행위,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, 장애차별행위,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관한 조사 및 구제

3. ~ 7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<신설>

2. -----아동·청소년·이주민-----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4(국가인권교육센터) ①

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·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,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,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.

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·협력 및 시행

2. 인권교육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

의 표명

3. 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·연구

4.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·협력

5.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

6.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·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

7. 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

8.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④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

2. 인권교육과정의 개발·관리

3. 인권교육과정의 운영

4.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·관리

5. 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
유지·관리

6.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
에 관한 사항

⑤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
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군 인권
관련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
항의 총괄·조정 및 운영계획
의 수립·시행

2.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
급 및 관리

3.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
계 등에 관한 연구

4.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
개발 및 관리

5.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
발 및 관리

6.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을 통
한 인권교육과정의 운영

7. 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
영에 관한 사항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06</u>	<u>220</u>	+14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01</u>	<u>215</u>	+14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94</u>	<u>208</u>	+14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94